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24일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성	이 *성 1968-02-10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서로13번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4-11
하 *균	하 *균 1976-01-15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서로13번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4-11